

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60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4. 8.
제출자 배강민, 김기남 의원

1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,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·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절차 및 지원금 회수 등(안 제5조~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·제8조,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5조,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- 다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5. 4. . ~ 2025. 4. .
 - 나) 예고결과 :
 - 2) 부서협의
 - 가) 협의기간 : 2025. 3. . ~ 2025. 4. .
 - 나) 협의결과 :
 - 3) 관련부서 : 체육과

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김포시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체육시설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김포시에 위치한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.
2. “사용료”란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3. “체육동호인조직”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등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동호인조직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체육동호인조직의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
1.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%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
2.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
3. 관내 기업 소속 체육동호인조직

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체육동호인조직이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기준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% 이내에서 지원한다.

②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한다.

제5조(지원절차)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금 회수 등) ① 시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학교로부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비율에 따라 반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5. 1. 31.] [법률 제20740호, 2025. 1. 31., 일부개정]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생활체육진흥법

[시행 2024. 2. 9.] [법률 제19593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4. 4. 25.] [법률 제19740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고등교육법

[시행 2025. 1. 21.] [법률 제20662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1. 7. 21.]